

■ 主題發表 4

司書教師의 人事制度問題(要約)

부산대연중학교교장
朴 泰 臣

I. 머리말

7.30 교육개혁 조치는 이제까지 시험점수에 눌러 빛을 보지 못했던 학교 교육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곧 탈과의 시대가 왔으며, 인간교육을 하는 새 교육 풍토가 마련된 것이다.

과의수업, 학관공부, 방송수업, 주초교사, 월말교사, 모의교사 등등으로 학생은 지칠대로 지치고, 교사들은 정상 수업 시수 외에 보충 수업 시수가 더하여 과로에 건강을 잃게 하였다.

이제 모든 교육 기능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으니 수업의 방법도 타율이 아닌 자율로 바뀌고 교과활동 못지 않게 특별활동이 중시되게 되었다. 이 모든 교육의 정상화에 따라 학교의 제반 시설도 정상적으로 정비확충되고 봉사하는 기능을 다할 것이다.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 길은 학교 도서관활동이 정상화되는 길이기도 하다. 거꾸로 학교도서관이 제구실을 할 수 있는 학교 풍토는 학교의 정상화의 풍토이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 발전의 희망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 교육개혁기를 맞이하여 학교도서관을 구성하는 세가지 기본 요소 (1) 도서관 직원 (2) 도서관 자료 (3) 도서관시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서 교사 문제를 고찰하기로 한다. 현행 우리나라 법규상에 나타난 사서 교사 인사제도의 제문제가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II. 사서교사의 직무

도서관법(1963.10.28 법률 제1424호)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학생 및 교원의 학습, 교양, 조사, 연구 및 레크리에이션 등 그 이용에 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의 시설을 말한다(제 3조 6항).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 6조는 사서직원의 배치를 명시하였는데 (1)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자료 및 운영에 관한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 (2)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의 자격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26조에는 학교도서관의 직무를 담당할 직원으로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각각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두어야 한다.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1969.11.3 대통령령 제191호) 제6조의 내용으로 (1) 국민학교에는 1인 이상의 사서교사나 1인 이상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2)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그 학생수가 1200인 이하인 때에는 1인의 사서교사나 1인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두며, 그 학생수가 1200인을 초과할 때에는 2인의 사서교사나 2인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법령은 아니지만 문교부가 작성하여 시달한 학교도서관운영지침(1978)은 학교도서관 기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제 3장 「학교도서관 직원」 1항 내용은 전기도서관법 제26조와 시행령 제 6조를 확인하고, 2항에는 전임 또는 겸임의 사서교사는 240시간 이상의 사서교사강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3항은 겸임사서의 주당 수업시간 수는 가급적 15시간 이내로 한다.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학습지도 및 학급사무 이외의 교무를 면제한다. 4항은 모든 도서관에는 1인 이상의 전임 사무직원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 국가가 법령으로 규정하고 문교부가 지침으로 밝힌 사서교사의 직무는 실로 방대하고 중요하고 전문성을 가진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관리적 직무—학교도서관 경영계획 수립, 도서관 운영위, 도서 선정위의 운영, 제규정 개선, 입안, 예산, 결산, 보고, 조사, 통계작성, 제장부 보관, 관계기관과의 연락.

(2) 기술적 직무—자료의 선택, 수집, 분류, 목록, 작업, 자료의 정비, 배자, 제적, 도서 이외의 자료 정리, 관리.

(3) 봉사적 직무—관내열람, 관외대출, 참고 업무, 도서관 자료의 소개와 안내, 홍보활동, 교사의 교재 준비의 원조, 도서관 행사 계획 실시, 가정, 지역 사회에의 봉사.

(4) 지도적 직무—학교도서관 이용지도의 계획과 실시, 독서회, 도서위원 지도.

위와 같은 직무를 감당하려면 사서교사의 양성과정

에서 철저를 기해야 할 일이지만 일반교사로서도 완전
에 가까운 품성과 식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하겠다. 사서교사의 자질로서는 정의와 연구와
정열이 가장 요구된다.

Ⅲ. 사서교사의 자격·보수·진로

정규 사서교사가 되려면 교육법 제79조 별표 교사자
격기준에 의하여 자격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결론적으
로 사서교사가 되는 길은 좁고 막이 힘든 그러면서 자
격기준이 낮은 편이다. 왜냐하면 사서교사 자격 ① 대
학졸업자로서 재학 중 도서관학과를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②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
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자 인바 실
기교사, 양호교사 자격기준과 유사하며, 준교사 자격증
만 가지면 교육 경력 유무에 불구하고 강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2급 정교사나 교도교사와 다르다.

그러면서 도서관학과를 가진 대학학부 졸업생에게
사서교사 자격증 획득의 길을 열었지만 그들은 교직과
정 이수가 힘들고 현재 교원으로 준교사 자격증 소지
자는 극히 적으며, 사서교사 양성 강습의 내용이 복잡
하고 어렵으며, 그 기회가 적은 실정이다.

자격증을 가진다고 해도 2급 정교사라면 '교육 공무
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호봉(봉급)의 혜택도 없다. 중
등학교의 경우 기산 호봉을 보면 사서교사 17호, 교도
교사 16호, 2급정교사 17호, 1급정교사 16호, 양호교
사, 17호인 것이다.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증
을 얻을 경우는 호봉 재획정을 받아 승급이 되는 것파
는 다르다. 교감 자격 기준(교육법 79조 별표 2)은 ①
1급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
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②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③ 교육대학의 교수, 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만 해당되므로, 사서교사 자격증만으로
는 교감이나 연구사, 장학사가 되는 길은 막혀 있는
것이다. 지난 날 사서교사 근무자로서 현재 교감, 장
학사,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있지만, 그들은 사
서교사 자격증 아닌 2급 정교사→1급→정교사→교감→
교장의 자격증을 얻어서 승진된 것이다.

Ⅳ. 제문제

가. 정원 배정 : 도서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급 학교에 사서교사 정원을 배정하여야 할 것이다. 19
68년도에 문교부에서 처음으로 전국에 배정시킨 일이
있었는데 그 숫자는 모두 33명으로 각 시도에 2~4명
이었다. 배정 받은 학교는 전통 있는 인문고교였으나
배정 받은 사서교사 T.O.는 일반교사 T.O.로 변하고
말았다.

도서관을 위하여 배정된 사서교사 정원이 영어, 수
학, 국어 등의 교과교사 정원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교고의 일반적인 풍토

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교육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먼저 중·고등학교에 건임의 사서교사 정원을 단계적
으로 배정할 것이 요망된다.

나. 자격증 제도 : 사서교사 자격 기준을 개정하되,
2급 정교사가 도서관교육을 받아서 2급 사서교사가 되
고, 2급 사서교사가 소정의 교육을 받아서 1급 사서교
사가되는 방향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사서교사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질의 향
상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1급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서
승급도 되고 교감, 장학사, 연구사의 길도 트이게 할
것이다.

다. 도서관 주임제도 : 교원의 승진기회 확대와 처우
개선으로 학교 경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중·고
등학교에 교원의 직급을 세분화하여 주임교사 제도를
1970.12.26. 대통령령 제5427호 교육법시행령 개정령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문교부 훈령 제209
호로 주임교사 임용규정을 제정하여 실시 후 수차례의
개정 작업이 있었지만 도서관 업무를 분담하는 주임
(도서관주임)은 아직 없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주임 임용규정 제정·실시 이전
부터 도서관주임 제도가 있어 지급도 도서관주임은 교
무분장상 있지만, 수당지급이 곤란하다는 말도 있다.
도서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승진기회를 주어야 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촉진하여야 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
다. 관계 법규를 개정하여 도서관주임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Ⅴ. 맺는 말

학습지도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 이용
의 능력을 육성하고 학습의 개별화와 개성의 신장, 독
서활동, 사회성 및 도덕성의 육성, 평생 교육의 태도
형성 등 오늘의 학교도서관이 맡은 교육적 역할은 참으
로 중요한 것이다. 학교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는 열쇠
를 쥔 사서교사의 자질과 능력이 도서관의 발전을 좌
우할 것임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좋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하여는 먼저 유능한 사서교
사를 확보해야 한다. 사서교사에게 승진 기회를 주고
보수면에서 우대하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만족과 사
기를 줄 것이다.

사서교사의 재교육 문제, 사서교사 자격증 없이 도
서관을 맡은 교사의 교육훈련 문제, 도서관 종사원에
대한 일반적인 연수문제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학교사서(사무직원)에 대한 정원 확보, 대우
문제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법의 제정, 학
교도서관 기준, 사서교사 연수(강습) 규정 등을 마련하
여 행정 재정적으로 강력히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